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31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1호

누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0. 12. 31. 지침 제41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와 동법 시행령 제3조(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는 청소년참여기구로써,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누림청소년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집”이라 한다) 청소년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지침에서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
② “청소년지도사(이하 지도사)”라 함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문화의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위원회 설치) 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하며, 이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한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, 성별,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1년 이상 연임한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연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⑥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 및 해촉)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 내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중에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기관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.

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무단으로 4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
2.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

3.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3장 기능 및 회의

제7조(위원회 역할)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③ 이 지침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④ 부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⑦ 각 위원은 회의에 안건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활동으로 한다.

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
2.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
3.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전달
4. 지역 내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 및 기관장이 부의(附議)하는 사항

제8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수련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개최)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임시회의는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 및 반영) ① 위원회는 연2회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동내용 및 의견을 보고·제안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관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상

제11조(보상)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에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기관 표창을 수여하거나,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.

제12조(활동지원) 문화의집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장 세칙

제1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(지침 제41호, 2020. 12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